

## EU, 영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 해제

김 정 섭\*

1996년에 내려졌던 영국산 쇠고기 상품과 생우에 대한 EU의 수출금지 조치(embargo)가 4월 하순쯤이면 해제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1996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생우와 2005년 6월 15일 이후 생산된 쇠고기 상품에 한해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8일 EU의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에 관한 상설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는 영국의 생우와 쇠고기 상품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검토 기간인 6주가 지나면 EU 집행위원회가 그 제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는 1996년 3월에 단행되었다.

이는 그 당시 영국에서 우해면양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하 BSE) 발병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 이번에 채택된 수출금지 조치 해제 의견은 EU 집행위원회가 2005년 7월에 채택한 ‘전염성해면양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하 TSE) 로드맵’에 규정된 수출금지 조치 해제 관련 조건들을 충족해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 규정에 따르면, BSE 발병이 일정 수준 이하에 머물러야 하며, EU 법규에 명시된 BSE 통제가 완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최종적으로 공식 문헌을 통해 공표되면, 영국은 1996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생우와 2005년 6월 15일 이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총국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마르코스 키프리아누(Markos Kyprianou)는 “EU 집행위원회는 BSE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장 엄격한 모니터링과 통제 수단을 적용했었다. 영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를 포함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에 소비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필수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 이후, 영국은 이 전염병에 대응함에 있어 큰 진보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해야만 한다.”라고 논평했다.

영국산 소, 쇠고기, 관련 가공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1996년 3월 이후 지속되어왔다(EU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96/239/EC). 1999년에는 그 금지조치가 개정되어, 뼈를 제거한 쇠고기와 그 가공 상품에 한해 생산일자를 확인하고 명시하고 여타 부가적인 통제 수단을 의무화한 ‘일별 수출 계획(Date-based Export Scheme, 이하 DBES)’ 하에 수출이 가능했었다.

DBES에 따라 영국은 1996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가공 상품을 수출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일련의 조건들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면, 해당 소가 6~30 월령이어야 하며,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소의 전 생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소의 어미소에서 BSE가 발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9 월령 이상의 소의 경우 반드시 뼈를 제거한 상품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사실상 DBES 하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영국산 쇠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EU 집행위원회의 'TSE 로드맵'이 공표된 이후, 영국산 쇠고기  
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돌기 시작했다. 이 로드맵  
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려  
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했다. 첫째, 영국은 가축 100만  
마리 당 200건 이하 수준에서의 추정 BSE 발병 수준을 유지해야만 했다. 둘  
째, 'EU 식품 및 수의 사무국(EU Food and Veterinary Office, 이하 FVO)'이 영  
국에서의 BSE 통제 강화 및 EU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보고  
서를 제출해야 했다.

2004년 5월에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영국에서  
의 BSE 발병이 100만 마리 당 200건 이하 수준에 머물 것이며 따라서 영국은  
이제 BSE 리스크가 높은 국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했다. 2005년 6월에는 FVO의 검사 결과, 영국에서의 BSE 통제 조치는 적절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EU 법규도 준수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이번 수출금지 조치 해제 제안은 유럽 의회로 송부될 것이다. 그리고 약 1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수출금지 조치 해제  
에 관한 법률 문건을 EU가 채택하고 공표하고나면, 그 즉시 발효될 것이다.

자료 : <http://europa.eu.int/rapi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RAPID)